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2026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15인	재적이사	14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일 시 : 2026. 2. 3. (화) 오전 10시 (회의소집 통지일 : 2026. 1. 26.)
2. 장 소 :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제1종합관 제1회의실
3. 출석임원
 - 이사(14명) : 화종부, 김기철, 김미열, 김주영, 박순석, 방성일, 배만석, 송태근, 이영민, 이진영, 이철우, 임재호, 정명호, 홍성인
 - 감사(1명) : 백창현
 - 총장 배석 : 박성규
4. 불참임원 : 박형근 (이상 감사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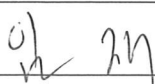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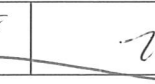
5. 안 건

▣ 보고 사항

- 법인 보고, 학교 보고, 기관 보고

▣ 심의 사항

1. 이사회 결의 사항 변경 결의 무효 확인
2. 정관 개정
3. 정관 시행세칙 제정
4. 법인 경조금 지급 규정 제정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법인위원 선임
6. 직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
7. 대학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8. 대학 2026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교수 연구년
9. 부속유치원 2026학년도 교원 신규임용, 면직
10. 대학 교원 인사 및 평가 관련 규정 등 개정(교원인사규정 등)
11. 대학 교원 관련 규정 등 제정(Joint Appointment 교원에 관한 규정 등)
12. 대학 보수규정 개정
13. 대학 강의료 지급 규정 개정
14. 법인회계 2025학년도 1차 추경, 2026학년도 예산
15. 교비회계 2025학년도 1차 추경, 2026학년도 예산
16. 양지캠퍼스 진입로 주변 토지 임대차 및 매매
17. 부속유치원 2026학년도 예산

간서명란				
------	---	---	---	---

18. 부속유치원 기부후원금 및 건축적립 만료금 명시이월 처리
19.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서초센터 2025년 결산, 2026년 1차 추경

6. 경건회 및 개회 선언

화중부 이사장의 사회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를 제창하고, 배만석 이사장의 기도 후에 이사장이 사도행전 20장 22~24절을 본문으로 강론하고,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친다.

김미열 서기 이사가 임원 호명 결과 재적 이사 14명 전원, 재적 감사 2명 중 1명 출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7. 전 회의록 확인 및 회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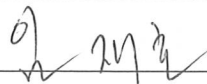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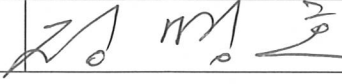
서기 이사가 2025년 제15차 이사회(2025. 12. 11. 실시) 회의록 2쪽 세 번째 단락 "2025년 제14차 이사회 회의록 4쪽 여덟 번째 줄 이하" 관련 사항은 본 이사회 심의 안건 제1호 '이사회 결의 사항 변경 결의 무효 확인'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제외하고, 그 외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이사회는 위 심의 안건에서 다루어질 사항 외 전체 내용에 대해 그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한다. (이진영 이사 동의, 배만석 이사 재청)

이사장이 본 회의에 상정된 보고 및 심의 안건을 알리며, 소관 위원회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계획에 대하여도 이사회 검토를 부탁한 결과, 이사회는 제출된 안건 전체를 임시로 채택하여 진행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한다. (김기철 이사 동의, 이진영 이사 재청)

8. 보고 사항

- 법인 보고

유상용 법인사무국 과장이 ① 2025. 12. 11. 자 장봉생 이사 사임서에 의한 사임으로 재적이사 수가 14명으로 변동된 사항 및 개방이사 사임이기도 한 사정으로 대학평의회(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추천 요청하고, 이사 사임에 대해 총회 보고한 사항, ② 이사 기부금으로 2025. 12. 22. 정명호 이사(혜성교회)로부터 25,000,000원, 2026. 1. 29. 김기철 이사(정읍성광교회)로부터 20,000,000원 입금된 사항, ③ 2025년 제15차 이사회에서 법인 목적/해산 관련 정관 변경 시 '총회 인준' 절차 추가하는 등의 정관 개정 한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항, ④ 2017년 회계 부분 감사처분에 대한 2025. 6. 30. 이후 추가 이행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요구받아 창원 토지 매각 공고 관련 내용 등으로 제출한 사항, ⑤ 법인사무국 직원 직무 변경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이사장실 비서가 일반행정 담당으로 발령된 사항 등을 보고하다.

간서명란			
------	---	--	---

이사장이 법인 보고 전체에 대하여 이사회에 묻고, 이사회는 그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김기철 이사 동의, 김미열 이사 재청)

- 학교 보고

대학에서 제출된 학교 보고 사항은 ① 2025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결과 및 졸업자 현황, ② 2025학년도 교비회계 제5차 예산 전용, ③ 대학평가/재정지원사업 준비 주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는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① 2025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결과 및 졸업자 현황

이지연 대학 교무인사지원처장이 2025학년도 전기 제56회 대학 졸업 사정 결과 신학과 등 총 9개 학과 269명의 졸업예정자 명단을 보고하다.

강대훈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장이 2025학년도 전기 신학대학원 졸업 사정 결과 제 119회 목회학석사(M.Div.) 274명, 목회학석사(글로벌M.Div.) 6명, 제2회 목회신학석사(Th.M.) 34명 이상 전체적으로 2025학년도 전기 신학대학원 졸업예정자 314명의 명단을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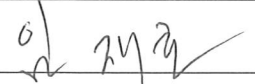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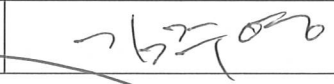
김규보 대학원 교학지원처장이 2025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등 총 8개 대학원 졸업 사정 결과 석사·박사 합격 125명(석사 112명, 박사 13명), 산업교육학부(계약학과) 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등 총 3개 대학원 졸업 사정 결과 졸업요건 충족 41명(석사 34명, 박사 7명), 이상 전체적으로 2025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등 총 8개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등 총 3개 산업교육학부(계약학과) 대학원의 학위취득자 166명의 명단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졸업 관련 학교 보고에 대해 이사회에 묻고, 이사회는 대학·신학대학원·대학원이 보고한 2025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결과 및 졸업생 현황을 그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김기철 이사 동의, 정명호 이사 재청)

② 2025학년도 교비회계 제5차 예산 전용

이희성 대학 기획혁신본부장이 2025학년도 교비회계 제5차 예산 전용으로, 등록금회계에서는 총장비서실 경조화환 등 대외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기관장업무추진비 5,200,000원을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비등록금회계에서는 양지캠퍼스 생활관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 건물매입비 계정 204,315,000원과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습인프라 개선비 부족분 기계기구매입비 계정 40,000,000원의 합계 244,315,000원을 집기비품매입비와 건설중인자산 계정에서 예산 전용하는 내용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예산 전용 관련 학교 보고에 대해 이사회에 묻고, 이사회는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학교 보고 그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간서명란			
------	---	---	---

③ 대학평가/재정지원사업 준비 주요 사항

대학 기획혁신본부장이 전반적인 대학평가 관련 수검 준비의 주요 사항으로, ㉠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2025~2026학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가 2027년 상반기 예정된 사항, ㉡ '사립대학 재정진단평가' 결과로 매년 재정건전대학과 경영위기대학으로 구분되는 상황에, 2026년 6월 재정진단평가 예정된 사항,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가 사업기간 중 매년 진행되는 가운데, 2026년의 경우 4~5월경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및 7~8월경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사항을 보고하다.

이어서, 특히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며 각 대학에 강력히 요구하는 제도인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해, 현재 총신대는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중독상담학과가 참여하나 향후 신학과, 교회음악과의 합류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하다.

이사장이 대학평가 관련 학교 보고에 대해 이사회에 묻고, 이사회는 신학과, 교회음악과가 각각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 '전공자율선택제' 시행을 위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할 것과, 학생들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후 2학년 전공을 선택할 때 신학과와 경우 소명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교회음악과의 경우 실기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며, 학교 보고대로 받기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 기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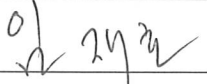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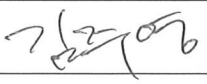
광진교육복지센터로부터 제출된 기관 보고 사항은 '2026년도 광진교육복지센터 운영 계획 및 예산안'으로, 2026년 2~3월 중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최종 확정되고 승인될 것을 전제로 이사회 보고되는 사항이다.

2026. 1. 29.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된 내용으로,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가정-지역사회 체계의 학생맞춤 통합서비스 제공' 중심의 2026년 중점 사업추진 방향이며, 기본급 인건비 증가분의 보조금 증가 등이 포함되어 2025년도 대비 22,027,000원 증가되는 세입·세출 합계 302,075,700원의 예산안에 대해 경영진단위원회 이진영 위원장이 이와 같은 사항 확인한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광진교육복지센터에서 제출된 자료대로 받기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9. 심의 사항

1) 이사회 결의 사항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서기 이사가 2025년 제15차 이사회(2025. 12. 11. 실시) '전 회의록 확인' 순서 중 '전 회의'에 해당하는 2025년 제14차 이사회(2025. 10. 23. 실시) 결의 사항이었던 '직원 징

간서명란			
------	---	---	---

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총장 경고'로 변경하였던 사항에 대해, 2025. 12. 11. 이사회를 마치고 법률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동일한 내용의 정관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 시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확인되어, 해당 이사회 회의록은 법령이 정한 기한에 따라 2025. 12. 21. 공개되었으나, 바로 이어 2025. 12. 24. 이사장 명의의 이사회 전체 이사와 감사 대상 공문으로 '전 회의록 확인' 시간에 직전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고 변경하였던 것이 무효임을 알린 사항을, 전체 이사회 회의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취지의 안건 상정 배경을 이사회에 보고하다.

이사장이 법률 검토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알리며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고, 이사회는 2025년 제15차 이사회 회의 당시 직원 징계의결 요구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이사 및 현재 절차 진행 중인 징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사들의 의견도 청취한 결과, 2025년 제15차 이사회 회의 중 '전 회의록 확인' 순서에서 취소 및 변경하였던 사안은 무효임과 그에 따라 2025년 제14차 이사회 회의에서 결의하였던 직원 징계의결 요구 건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임재호 이사 동의, 이진영 이사 재청)

2) 정관 개정

법인사무국 과장이 대학 청원 정관 개정 사항 관련, 2026. 1. 14.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검토된 결과로, 제39조(임용)는 대학 교원 소속 변경에 대한 조항에 '절차에 따라' 등을 추가하는 문장 조정, 제41조(휴직 사유) 및 제42조(휴직 기간)에는 더 이상 휴직 대상 아닌 '연구년' 삭제하고,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에서 협력사업 등 수행하는 경우 추가하며, 기존 없었던 '파견'에 관하여는 제44조의2(교원 파견)로 신설하는 사항을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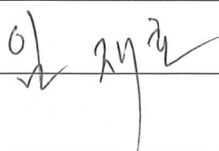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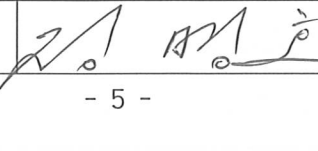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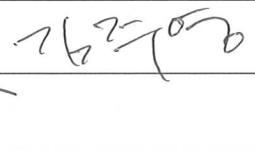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고, 이사회는 정관개정위원회 임재호 위원장으로부터도 확인받은 결과로 대학의 정관 개정 청원 사항을 그대로 받아 개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김기철 이사 동의, 김미열 이사 재청)

개정 정관 각 조항과 별도의 동의 재청 후 만장일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9조 6항 신규대비는 다음과 같다. (김기철 이사 동의, 방성일 이사 재청)

조	기존	2026. 2. 3. 정관 개정
제39조 (임용)	⑥ 대학교 교원은 학부,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대학교 교원에 대해서 학부,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소속으로 임용하되, 임용 절차에 따라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 제41조, 제42조 신규대비는 다음과 같다. (정명호 이사 동의, 김미열 이사 재청)

간서명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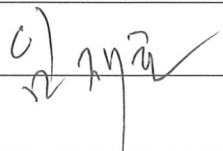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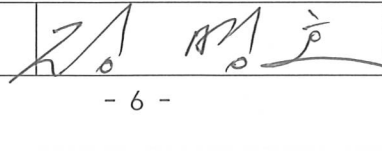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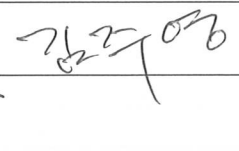
조	기존	2026. 2. 3. 정관 개정
제41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5. 동일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 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7.~12. 동일 13. 연구년에 해당하여 연구를 하게 된 때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5. 동일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 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협력사업 수행에 참여하게 된 때 7.~12. 동일 13. 삭제 14. 국가기관에서 전일제 업무 수행을 하게 된 때
제42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4. 동일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12. 동일 13. 제41조 제13호의 휴직기간에 관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4. 동일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 또는 협력사업 수행기간으로 한다. 6.~12. 동일 13. 삭제 14. 제41조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정관 제44조의2 신규대비는 다음과 같다. (김기철 이사 동의, 홍성인 이사 재청)

조	기존	2026. 2. 3. 정관 개정
제44조 의2 (교원 파견)	(없음)	<u>학교 정책의 수행 및 이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필요하거나 기타 학교 발전을 위해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교 교원 중 선발하여 국내·외 기구 또는 기관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u>

3) 정관 시행세칙 제정

이사장이 본 이사회에 상정된 정관 시행세칙 제정안이 2026. 1. 14. 정관개정위원회 결과 2025. 12. 11. 이사회에 제출되었던 안에서 변경 없는, 정관 각 장 구성과 일치된 총 8개 장(보칙 포함) 및 전체 15개 조와 부칙(시행일)으로 구성된 제정안인 것을 이사회에 알리며,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다.

간서명란			
------	---	--	---

이사회는 전체적인 토의 및 검토 결과, 제7조(임원 구성) 2항 '총회 추천 이사 선임 시 지역 안배' 사항을 '총회 선출직의 3개 구도대로 지역 안배'한다고 하며 '서울·서북' 등 구체적인 기재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제9조(재정기여)는 조항으로까지는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논의된 그대로 제7조(임원 구성)를 수정하고(김미열 이사 동의, 이진영 이사 재청), 제9조(재정기여)는 삭제한 후(김미열 이사 동의, 홍성인 이사 재청) 제10조 내지 제15조는 모두 제9조 내지 제14조로 숫자 변경하여 제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김기철 이사 동의, 임재호 이사 재청)

제정 정관 시행세칙 각 조항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총신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총신대학교 부속유치원(이하 '부속유치원'이라 한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제3조(총회의 후원) 대학, 부속유치원, 수탁기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이하 '총회'라 한다)의 후원 하에 법인 이사회에서 운영·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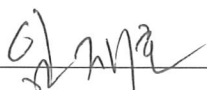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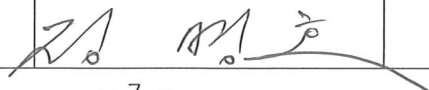
제4조(시행세칙의 변경) 이 시행세칙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시행세칙에 연관된 정관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정관의 변경은 정관 제5조에 따른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관리 및 책임) ① 정관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대학 및 부속유치원 등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학교의 장이 관리하며,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위임 절차에 따라 기관의 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재산의 위임 절차는 위탁받은 최초 시기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관리책임을 위임받고, 종료 시기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관리책임을 종료한다.

제6조(예·결산 공시) 정관 제12조의2의 법인 예·결산 공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안내에 따라 예산은 매년 6월, 결산은 매년 8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공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시한다.

간서명란			
------	---	--	---

제3장 기관

제7조(임원 구성) ① 정관 제20조의 임원 선임 시 적어도 이사 정수의 5분의 1인 3인 이상은 전문직 기능별 이사로 하며, 전문직 기능별 이사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이다.

② 정관 제20조 제2항의 총회 추천 이사 선임 시 이사회는 총회 선출직의 3개 구도대로 지역 안배하여 선임한다.

③ 이사회는 총회 추천 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총회에 고지하고, 임기 중 사임 등 결원 발생 시에는 즉시 총회에 고지한다.

제8조(직무 설치) 이사회는 정관 제2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장의 업무를 돕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서기 1인을 둔다. 서기의 임기는 임원 임기 중 이사장 임기 내로 한다.

제9조(위원회) ①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각종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이사회 안건 중 관련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각 위원회는 5인 내외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임원 임기 내로 한다. 단, 법령과 정관에 의해 구성하게 되어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징계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는 해당 법령과 정관에 따른다.

제4장 수익사업

제10조(수익용 기본재산 목록) 이 법인이 정관 제32조의 수익사업으로 임대업을 하는 정관 제6조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백일상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234
2. 두산위브트레지움 101동 2503호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1
3. 상도삼호아파트 102동 603호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08
4. 상도삼호아파트상가 1동 110호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08
5. 상도삼호아파트상가 1동 112호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08

제5장 해산

제11조(총회 보고) 정관 제36조의 결정에 따라 정관 제37조 내지 제38조에서 규정한 법인 청산 결과를 해당 연도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교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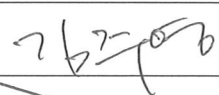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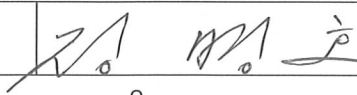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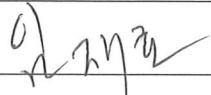
제12조(학교의 장 추천) 정관 제39조에 따른 학교의 장 임명을 위한 추천 방법으로, 대학은 정관 제39조의3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에 3배수 추천하며, 부속유치원은 대학 관련 학과 교수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다.

제7장 직제

제13조(법인사무국 업무) 정관 제90조에서 규정한 법인사무국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인·학교·수탁기관(이하 '법인 전체'라 한다) 운영계획 종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법인 전체 예결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법인 전체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인/인감 및 문서 관리의 사항
6. 법인 소관 재산과 물품의 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 감사의 직무보조
8. 그 밖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관업무로 되는 사항

간서명란



제8장 보칙

제14조(시행세칙의 보완) 이 시행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보완한다.

부칙

① 이 시행세칙은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법인 경조금 지급 규정 제정

법인 소속 임직원 경조사에 대한 이사장 축의·조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총신대 대학 교직원 복지 규정 및 다른 대학 법인 경조금 지급 규정 등과 비교하여 제정 검토된 본 안건 관련, 2026. 1. 29.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된 내용으로 위원장 이진영 이사가 경조금 지급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나 재정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또한 본인 및 자녀에 대하여 차등을 두는 일반적 예에 따라 법인 경조금 지급액은 본인의 경우 30만원, 자녀의 경우 20만원 등으로 하는 안을 이사회 보고하다.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이사회는 대학 교직원 복지 규정상 경조금 지급액 보다는 낮은 수준인 점 및 전체 조항을 대학 및 다른 대학 법인 관련 조항을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로, 경영진단위원회 위원장 제시한 금액 포함 위원회 검토한 대로 법인 경조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기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제정된 「법인 경조금 지급 규정」 전문은 본 회의록 뒤에 붙임)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법인위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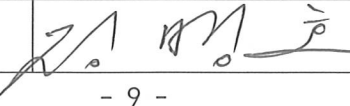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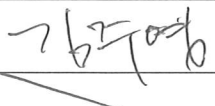
이사장이 이사이자 개방이사였던 장봉생 이사 사임 후속 사항으로, 법인 보고 받은 것과 같이 대학평의원회를 경유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추천 요청한 상황에, 장봉생 이사가 추천위원회 법인 추천 위원이기도 하였던 관계로 결원이 된 추천위원회 법인 추천 위원 선임을 위해 이사회에 자천 또는 타천을 요청하다.

이사회 토의 결과, 임재호 이사를 신임 추천위원회 법인 추천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이에 추천위원회 법인 추천 위원은 기존 위원인 송태근 이사와 함께 임재호 이사 2인이 되어, 추천위원회 구성되도록 본 이사회 결과로 대학평의원회에 알리기로 하다.

6) 직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

이사장이 직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1인의 임기만료일이 2026. 3. 5.인 상황에, 사립학교법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에 따라 외부위원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사항까지 알리며, 본 직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에 대한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다.

간서명란			
------	---	--	---

- 9 -

이사회 검토 결과, 임기만료 예정 외부위원은 아직 연임한 바 없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상황에, 임기만료 후 같은 법령이 정하는 외부위원 임기 3년으로 연임하도록 의견을 모아, 현 외부위원 김혜숙 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부)를 임기만료 후 3년 임기(2026. 3. 6. ~ 2029. 3. 5.)로 연임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정명호 이사 동의, 김미열 이사 재청)

7) 대학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학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2025. 10. 23. 이사회에서 허락된 3개 전공 분야 전임교원 신규임용 사항으로, 공고-지원접수-심사 등 학교 절차 거친 결과 2개 전공 분야(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회교육,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설교학) 복수후보자 총 4명 자료이며, 2026. 1. 26. 신학위원회가 후보자 면접심사 포함 사전 검토한 내용으로 위원장 방성일 이사가 이사회 보고하다.

신학위원회는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회교육 전공 심사 결과 '목회 현장의 교회교육 성과가 더 있어, 실천신학 특성상 학문성 및 현장성 융합이 필요'한 점에서 '더욱 적임자'라는 총장 추천 의견과 함께, '현재 교회교육을 목양 현장에서 통전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회에서 교회교육 계획 및 실천의 실현 능력이 확인'되며, '소통 능력, 학교 사랑, 열정'이 돋보인다는 신학위원회 의견을 더해 1인 후보자를,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설교학 전공 심사 결과에서도 '한국교회 강단의 개혁신학적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신학위원회 심사 의견을 붙여 1인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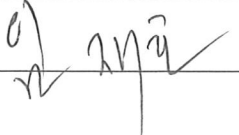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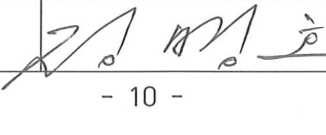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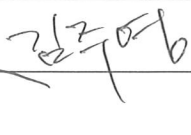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와 결정을 요청하여, 이사회는 대학으로부터 제출된 전 과정의 자료와 신학위원회 평가점수 집계표까지 확인한 결과로, 신학위원회 1순위 추천대로 2026학년도 1학기 신규 전임교원을 임용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홍성인 이사 동의, 박순석 이사 재청)

※ 신규임용된 각 교원의 임용 기간 포함 개인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이돈하 정년계열 조교수 : 2026. 3. 1. ~ 2028. 2. 29. (임재호 이사 동의, 홍성인 이사 재청)
-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김지혁 비정년계열 조교수(산학협력중점교원) : 2026. 3. 1. ~ 2028. 2. 29. (이진영 이사 동의, 박순석 이사 재청)

8) 대학 2026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교수 연구년

대학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교수 연구년 규정과 2026학년도 2학기 교수 연구년 신청 결과 총장 제청하는 4명의 명단 및 각 신청자의 연구년 연구 계획이며, 2026. 1. 26. 신학위원회가 사전 검토한 결과 위원장이 모두 허락하는 의견으로 이사회 보고하다.

간서명란			
------	---	---	---

이사가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이사회는 각 신청자의 연구 계획 포함한 학교 자료 확인 후, 신학위원회 의견대로 대학에서 제출된 대상자 4명 전원의 교수 연구년 시행을 만장일치 결의하다. (정명호 이사 동의, 이철우 이사 재청)

※ 교수 연구년 승인된 각 교원 개인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학 신학과 황선우 교수 : 연구년 기간 2026. 9. 1. ~ 2027. 8. 31. (1년)
* 연구 과제 : 열왕기상·하 주석 집필
- 대학 역사교육과 송웅섭 부교수 : 연구년 기간 2026. 9. 1. ~ 2027. 8. 31. (1년)
* 연구 과제 : 성종~연산군 전반 인사행정 과정에서의 삼사의 역할과 그 의미
- 대학 교직과 김한나 부교수 : 연구년 기간 2026. 9. 1. ~ 2027. 8. 31. (1년)
* 연구 과제 : 교육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연구
- 행정학적 제도이론과 비교행정적 접근
-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박현신 부교수 : 연구년 기간 2026. 9. 1. ~ 2027. 2. 28. (6개월)
* 연구 과제 : 개혁주의 강해설교의 문화변혁적 적용에 관한 연구

9) 부속유치원 2026학년도 교원 신규임용, 면직

부속유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2026학년도 1학기 신규임용 대상 공동담임교사 2명의 제청서, 이력서 등의 자료와, 2026. 3. 1. 자 의원면직 8명의 사직원 등의 자료이다.

이사장의 부속유치원으로부터 제출된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고, 이사회는 제출된 자료대로 신규임용 및 면직을 허락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김미열 이사 동의, 이진영 이사 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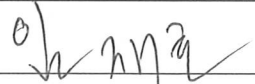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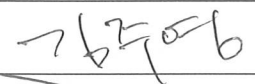
※ 신규임용 및 면직 교사 각 개인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규임용>

- 김의진 : 교사(공동담임교사), 임용 기간 2026. 3. 1. ~ 2027. 2. 28.
- 윤예원 : 교사(공동담임교사), 임용 기간 2026. 3. 1. ~ 2027. 2. 28.

<면직>

- 김하경 : 교사(정교사), 면직 일자 2026. 3. 1.
- 김하은 : 교사(정교사), 면직 일자 2026. 3. 1.
- 김은혜 : 교사(공동담임교사), 면직 일자 2026. 3. 1.
- 김예온 : 교사(공동담임교사), 면직 일자 2026. 3. 1.
- 양다현 : 교사(공동담임교사), 면직 일자 2026. 3. 1.
- 은채연 : 교사(공동담임교사), 면직 일자 2026. 3. 1.
- 주찬미 : 교사(공동담임교사), 면직 일자 2026. 3. 1.
- 현유빈 : 교사(공동담임교사), 면직 일자 2026. 3. 1.

간서명란			
------	---	---	---

10) 대학 교원 인사 및 평가 관련 규정 등 개정(교원인사규정 등)

① 교원인사규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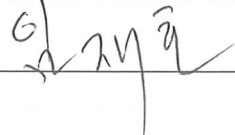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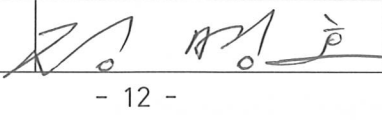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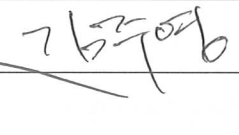
대학 교무인사지원처장이 교원인사규정 개정 청원으로, 2025. 12. 11. 이사회 제출하였던 ㉠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요구되는 교원임용 정책 규정화 관련 제7조 3항 신설,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2개 이상 학과(전공) 활동 가능한 Joint Appointment 교원 관련 제31조의2 신설, ㉢ 교원 파견 관련 정관과 파견 상세 사항 다룰 규정 사이에서 교원인사규정상 연결하는 역할의 제23조의2 신설, ㉣ 징계처분 기록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도과 후 말소하는 근거로 제35조 3항 신설하는 등의 사항과, 본 2026. 2. 3. 이사회에 추가 제출된 ㉤ 보직 중 부속부설기관 장에 한해 비전임교원 특임교수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 제26조 1항에 추가하는 사항 및 그 외 전체적으로 ㉥ 같은 규정 내 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으로 통일하며(예: 교원의 직무 중 '강의'를 '교육'으로), 보완하고(예: 정년계열 전임교원 수행 직무에 논문지도, 취업지도 등 추가하여 구체화), 자연스럽게 명료화하는 표현 정리(예: 제19조 재심청구 표현 전반) 및 띄어쓰기(예: '시행 세칙'을 '시행세칙'으로)와 마침표 등 표기 바로잡는 일체의 수정 사항을 보고하다.

이상의 대학 제출 자료에 더해, 2026. 1. 26. 신학위원회 보고 결과 재검토하도록 요구받았던 사항으로, 위 ㉥ 징계처분 기록 말소 관련 정직 등 중징계 기록 말소에 대하여는 심의 절차 두고 그 결과로 말소하는 사항과, ㉤ 보직 중 부속부설기관 장에 한해 비전임교원 특임교수 임명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 교원 지칭하는 문안 단순화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의 경우에는 해당 제35조 3항 표현 중 '임명권자가 말소하여' 부분을 '임명권자가 심의 후 말소하여'로 '심의 후'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 경우에는 '비전임교원 특임교수'를 '특임교수'로 하여 '비전임교원'을 제외하는 안으로 보고하다.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학교 제출 자료 및 신학위원회 검토에 따른 수정 의견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이사회는 ㉥ 징계처분 기록 말소 관련하여 정직 등 중징계 기록 말소에 대하여 심의 절차 두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그 심의 기구가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토의한 결과 해당 징계 의결하였던 징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 기록 말소하는 심의 기구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징계기록 말소 제한기간 경과 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 7년 등 포함 학교가 제출하고 보고한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전체에 대해 보고받은 대로 개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이진영 이사 동의, 김기철 이사 재청)

② 비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

대학 교무인사지원처장이 비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 청원으로, 2026. 2. 3. 본 이사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연구교수의 자격(제37조)과 임무(제41조) 중 학교 정책 차원의 추진 사업 관련 직무에 대하여 추가하는 개정안을 보고하다.

간서명란			
------	---	--	---

- 12 -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학교 정책 차원의 추진사업 한 예가 칼빈박물관 개관 등이며, 신학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한 이사회는 학교가 제출하고 보고한 대로 개정하기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③ 교원 업적평가 시행세칙 개정

대학 교무인사지원처장이 교원 업적평가 시행세칙 개정 청원으로, 2025. 12. 11. 이사회 제출하였던 사항으로, ㉠ 제2조(평가영역)에서 Joint Appointment 교원의 업적평가 시 통상 특정 학과만이 아닌 어디에서든 수행 업적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연구·봉사·교육 영역에서 수행한 업적을 평가 대상으로 명시화 하는 내용 및 ㉡ 제5조(평가의 예외인정)에 교원 파견 항목 추가하고, 휴직이 있는 상황에 및 휴직으로 갈음될 수 있어 중복 성격이 있는 해외연수 항목은 제외하는 개정안을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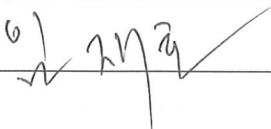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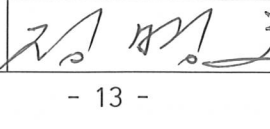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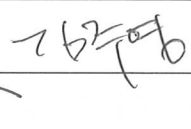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신학위원회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확인한 이사회는 보고받은 대로 개정하기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④ 승진임용 및 재임용 시행세칙 개정

대학 교무인사지원처장이 승진임용 및 재임용 시행세칙 개정 청원으로, 2025. 12. 11. 이사회 제출하였던 사항으로, 학과 교원충원계획과 학교 임용정책 고려한 전임교원 중 중점교원의 직군전환 관련, 직군전환 위한 지원자격 및 평가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칙을 신설하여, 과거 2020. 2. 7. 신설하였던 부칙과 같이 한시적으로 직군전환 시행하는 계획의 개정안을 보고하고, 2026. 1. 26. 신학위원회 보고 후 '교원 직무에 따른 책무와 직군전환과의 관계' 측면에서 검토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직군전환 위한 부칙 신설 필요'를 포함하여 추가 자료로도 제출하다.

신학위원회 방성일 위원장은 2026. 1. 26. 신학위원회 및 이후 계속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교원을 운용하는 학교 경영 입장에서 볼 때 직군전환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칙으로서가 아닌 상시적으로 직군전환 할 수 있는 본 규정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학교가 추후 그와 같이 본 규정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 결과로 이사회 제출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하는 의견을 이사회에도 보고하다.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이사회는 학교로부터 청원된 사항이 ㉠ 비정년계열 교육중점교원의 직군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과거 2020. 2. 7.에 역시 직군전환 가능하도록 신설하였던 부칙과 비교하여, 최초 임용 후 6년 경과하고 학과 추천 거쳐야 하는 등 더 강화된 절차로 직군전환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 대학평가가 요구하는 직무 특성에 맞지 않는 현 교원임용 및 운영 정책의 시정 차원에서 현재 교원중점교원을 마지막으로 신규임용 한 2023. 9. 1.까지 임용되었던 교육

간서명란			
------	---	---	---

중점교원의 직군전환 근거가 되는 내용인 것을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현 시점 교원의 직무와 지위를 일치시켜야 하는 학교 사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학교 청원대로 직군전환 가능한 부칙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아직 신학위원회 권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학교가 제출하고 보고한 대로 부칙 신설하는 승진임용 및 재임용 시행세칙 개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방성일 이사 동의, 이철우 이사 재청)

11) 대학 교원 관련 규정 등 제정(Joint Appointment 교원에 관한 규정 등)

① Joint Appointment 교원에 관한 규정

대학 교무인사지원처장이 Joint Appointment 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 청원으로, 2025. 12. 11. 이사회 제출하였던 자료에 더해 2026. 1. 26. 신학위원회 보고 후 검토된 사항으로, ㉠ Joint Appointment 교원이 대학평가 관련 주요 사항으로 보고되었던 '전공자율선택제'에 따라 학생들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하는 것에 맞춰 대응되는 교원 운영 형태로서 그 임용과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정으로 2025. 12. 11. 이사회 자료 제출하였던 점, ㉡ 2026. 1. 26. 신학위원회 전후 수정 제출된 사항으로, 제3조 2항 '강의'를 '교육'으로 수정하고, 제12조 규정의 개폐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며, 제13조 보칙 및 부칙 등에서 교원 임용 사항으로서 총장 사항을 법인이사회 사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포함된 Joint Appointment 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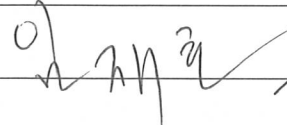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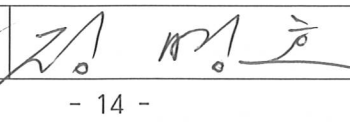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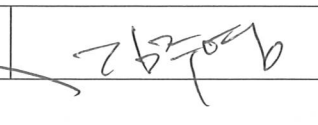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신학위원회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확인한 이사회는 보고받은 대로 제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정명호 이사 동의, 홍성인 이사 재청)

② 교원 파견에 관한 내규 제정

대학 교무인사지원처장이 교원 파견에 관한 내규 제정 청원으로, 2025. 12. 11. 이사회 제출 자료에 더해 2026. 1. 26. 신학위원회 보고 후 검토된 사항으로, ㉠ 본교 교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이나 기구에 파견하는 것 관련 기존 규정 중 구체적 조항 없어 규정 제정으로 2025. 12. 11. 이사회 자료 제출하였던 점, ㉡ 2026. 1. 26. 신학위원회 절차에서의 제출 사항으로, 규정 체계 중 '내규'보다 한 단계 상위인 '시행세칙'으로 규정 명칭 변경하고, 교원 파견을 교원임용 사항으로 보아 총장 사항을 이사장 또는 법인이사회 사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포함된 '교원 파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안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신학위원회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확인한 이사회는 보고받은 대로 제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이영민 이사 동의, 임재호 이사 재청)

12) 대학 보수규정 개정

간서명란			
------	---	--	---

대학 기획혁신본부장은 본 안건이 2025. 12. 11. 이사회 후 다시 심의하는 사항으로, 국제교류 관련 특임교수 임용하여 진행하는 외국인 학생 모집 사업은 승인하여 진행 허락받았던 사항으로, 그러나 특임교수 임금체계 포함 보수규정 개정은 외국인 학생 모집 관련 상세 사업계획 및 다른 대학 사례와의 비교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던 사정에, 외국인 학생 모집 관련 부서인 국제교육원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지난 2025. 12. 11. 이사회에서 보류되었던 특임교수/연구교수의 급여사항 포함 각 특임교수별 성과급안을 함께 보고하고, 보수규정 개정을 청원하다.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이사회는 총장에게 추가 보고를 받고, 경영진단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지난 이사회 보수규정 개정 보류 사유인 해당 사업계획 보고되었으므로 학교 보고대로 받고 약 2년 후 성과점검 필요할 것으로 보고받은 후 학교가 제출하고 보고한 대로 보수규정 개정하기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13) 대학 강의료 지급 규정 개정

대학 기획혁신본부장이 교비회계 2026학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강의료 지급표에 대해, 2026학년도 시간강의료 및 초과강의료를 2025학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로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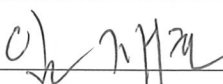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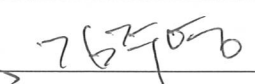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이사회는 학교가 제출하고 보고한 대로 2026학년도 시간강의료 및 초과강의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강의료 지급 규정 개정을 만장일치 결의하다. (이진영 이사 동의, 김미열 이사 재청)

14) 법인회계 2025학년도 1차 추경, 2026학년도 예산

① 법인회계 2025학년도 1차 추경

본 안건으로 제출된 자료는, 법인회계 2025학년도 1차 추경안으로, 예산 대비 ㉠ 수익사업회계는 2024. 11. 22. 매매계약 후 계약금/중도금 합계 1,280,000,000원 선수금 처리로 인한 2024학년도 결산 차기이월자금의 2025학년도 반영으로 증가된 전기이월자금 170,568,738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인 백일상가 입주상가 11개 호 중 1개 호 공실과 다른 1개 호 임대료 등 지연입금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 76,000,000원 감소 등으로 수입·지출 총액 83,768,738원 증가하는 2,448,768,738원과, ㉡ 일반업무회계는 일반기부금 수입 등 감소로 수입·지출 총액 202,657,064원 감소하는 830,842,936원의 추경안이다.

2026. 1. 29. 사전 검토한 경영진단위원회 보고된 사항으로서, 일반업무회계 일반기부금 수입 및 법정부담전출금 지출 동시에 더욱 감소 추정되나, 법정부담전출금 지출 추경은 그에 대응하는 교비회계 법정부담전입금 수입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교비회계 추경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절차적 사항으로 안되어, 법인회계 일반기

간서명란			
------	---	---	---

부금 수입 부족 및 법정부담전출금 지출 불용 전제하며, 차기 개선 계획으로 법인회계 법정부담전출금 추경 필요 시, 교비 추경 시작 시점 법인 공문으로 통지하여 법인은 법정부담전출금, 교비는 법정부담전입금 일치하는 추경 진행 계획 포함된 자료이다.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고, 사전 검토한 경영진단위원회도 위의 일반업무회계 추가 감소 추정 외 다른 부분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이사회는 법인회계 2025학년도 1차 추경안 ㉠ 수익사업회계 2,448,768,738원과 ㉡ 일반업무회계 830,842,936원의 수입·지출 총액 승인을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② 법인회계 2026학년도 예산

본 안건으로 제출된 자료는, 법인회계 2026학년도 예산안으로, ㉠ 수익사업회계는 현 시점 2026학년도 재산 변동 없는 유지 전제 2025학년도 반포미도아파트 매도에 따른 고정자산매각 수입 2,800,000,000원 대비 2026학년도는 해당 사항 없어 같은 금액 2,800,000,000원 감소로, 전년이월자금은 반포미도아파트 선수금으로 인한 마이너스 부분 해소되어 1,607,569,775원 증가로 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 추경 대비 898,430,225원 감소하는 수입·지출 총액 1,550,338,513원과, ㉡ 일반업무회계는 법령에 따른 직원 연금 방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퇴직기금 인출 및 중도 정산 등의 사유로 전년 추경 대비 127,357,064원 증가하는 수입·지출 총액 958,200,000원의 예산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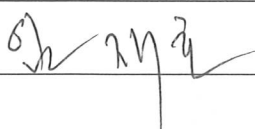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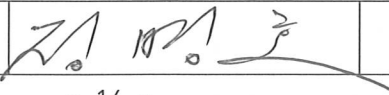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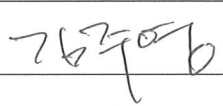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고, 사전 검토한 경영진단위원회도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이사회는 법인회계 2026학년도 예산안 ㉠ 수익사업회계 1,550,338,513원과 ㉡ 일반업무회계 958,200,000원의 수입·지출 총액 승인을 만장일치 결의하다.

15) 교비회계 2025학년도 1차 추경, 2026학년도 예산

① 교비회계 2025학년도 1차 추경

본 안건으로 제출된 자료는, 교비회계 2025학년도 1차 추경안으로,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1항 단서에 따라 '등록금회계로부터 해당연도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비등록금회계의 교육시설 등 건축 관련 적립'할 수 있어 등록금회계 1,419,840,797원을 비등록금회계 전출로 건축기금 적립하는 것을 등록금-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로 하는 외, 신학대학원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 및 신학대학원 일반장학금 모두 원금보존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합계 1,100,000,000원이 비등록금회계 증가분으로, 교비회계 합산으로도 수입·지출 총액 1,100,000,000원 증가하는 53,696,406,000원의 추경안이다.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고, 사전 검토한 경영진단위원회는 위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단서 조항 확인 외 다른 부분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이사회는 교비회계 2025학년도 1차 추경안으로 등록금-비등록금회

간서명란			
------	---	--	---

계 내부거래 1,419,840,797원 외 비등록금회계 장학금 기금적립 1,100,000,000원에 의한 교비회계 수입·지출 총액 53,696,406,000원의 승인을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② 교비회계 2026학년도 예산

대학 기획혁신본부장이 2026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으로,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등록금 3% 인상, ② 사당캠퍼스 기숙사 신축을 위한 15,000,000,000원 및 양지캠퍼스 수도 공사 위한 1,000,000,000원 합계 16,000,000,000원을 건축적립금에서 인출하는 사항, ③ 사당캠퍼스 기숙사 2026년 8월 착공하는 신축 일정계획, ④ 대학혁신지원사업 2026학년도 예산 2,000,000,000원 편성 내역 등을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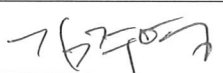
경영진단위원회 이진영 위원장은 특별히 교비회계 예산안 사전 검토한 사항으로, ㉠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박성규 총장 이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좋은 부분, ㉡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당평생교육원의 감소가 뚜렷하여 서울 사당이라는 입지의 잇점, 좋은 프로그램의 계획 등에 대해 학교가 방법을 찾아볼 부분, ㉢ 매년 분석되고 있는 교육원가 보고서상 학과 별 손익계산서에 따른 대응 방안의 연구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위 ㉡과 ㉢에 대하여는 추후 학교의 준비와 보고도 부탁하다.

총장은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사회에 감사 인사를 하고, 경영진단위원회의 진단 및 요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2026학년도 포함 당분간 외국인 학생 모집을 추진하는 국제교육원의 성과 창출로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교비회계 2026학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고, 이사회는 경영진단위원회 위원장과 총장 의견도 경청한 결과로, 학교로부터 제출된 전년 대비 18,378,297,000원 증가된 2026학년도 교비회계 수입·지출 총액 70,974,697,000원의 예산안 승인을 만장일치 결의하다. (김미열 이사 동의, 방성일 이사 재청)

16) 양지캠퍼스 진입로 주변 토지 임대차 및 매매

법인사무국 과장이 2025. 6. 25., 8. 21. 이사회 결과와 연계된 후속 사항으로, 양지캠퍼스 진입로 주변 토지로서, ① 양지리 56번지(캠퍼스 진입로 포함 필지, 전체 3,709㎡)와 ② 제일리 산44-2번지(진입로 인접 중심 필지, 전체 6,446㎡) 관련하여 각각 기존 매수방향서 대비 조건이 변화된 매수방향서가 갱신되어 접수된 사항을 ① 양지리 56번지의 경우 기존 68㎡에서 면적을 350㎡로 넓힌 매수 의향서로, ② 제일리 산44-2번지의 경우 기존 1,800㎡에서 면적을 1,476㎡로 좁히는 대신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매수 의향서 제출받은 사항을 보고하다.

간서명란			
------	---	--	---

이어서, 2026. 1. 29.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는, 기존 2025. 8. 19. 경영진단위원회에서 검토하였던 것과 같이, 아직 의향가가 적정 수준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하며, 양지리 56번지 관련하여서는 분할 등기되지 않을 경우 분할 등기 신청 철회하는 등의 방안이 아닌, 분할하지 않고 해당 필지 전체 매각하는 원칙으로 하여, 의향자들에게도 해당 필지 분할 아닌 필지 전체(① 양지리 56번지, ② 제일리 산44-2번지 등) 매매 원칙을 알리기로 하였으며,

또한, 2017년 교육부 회계부분 감사 결과 지적된 필지들(제일리 산44-2 포함 13개 필지)에 대하여는, 지적된 필지는 아니지만 양지리 56번지 등 도로 포함하고 있는 필지들에 대하여 도로사업에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방문 면담 결과 보고되었던 관할청(용인시, 처인구)에도 도로사업 추진 촉구하는 정식의 요청 공문도 보내어, 양지캠퍼스 교외부지 토지재산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고, 그 결과로 교육부에도 보고하도록 권고된 사항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여, 이사회는 사전 검토한 경영진단위원회 입장과 권고 외 추가적으로 해당 토지 매수 의향자들과 공동 개발하고 수익 배분하는 방안 역시 선택안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그 외 전체적으로는 경영진단위원회 의견과 권고를 받아 이후 협상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김미열 이사 동의, 이진영 이사 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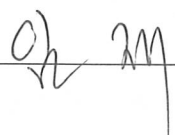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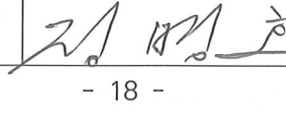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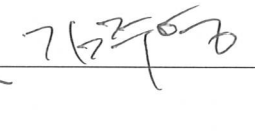
17) 부속유치원 2026학년도 예산

본 안건으로 부속유치원에서 제출된 자료는, 2026학년도 예산 수립 배경으로 무상교육비(4, 5세)와 유아학비(3세) 보조금/지원금은 합계 60,227,000원 증가하나, 보조금 등 증가에 따른 학부모 부담 수업료 감소가 174,213,000원이며, 그 외 본 이사회 다음 제18호 심의 안건에서 다룰 사항으로 전년도(2025학년도) 이월금을 명시이월 처리하여 증가되는 금액 266,055,000원이 있어, 전년도 예산 대비 151,569,000원 증가하는 세입·세출 총액 1,607,053,000원의 2026학년도 예산안이다.

이사장이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고, 사전 검토한 경영진단위원회도 확인한 부속유치원의 공동담임제도 축소 등 교직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 202,126,000원도 자료상 확인되는 가운데, 이사회는 세입·세출 총액 1,607,053,000원의 2026학년도 부속유치원 예산안 승인을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18) 부속유치원 기부후원금 및 건축적립 만료금 명시이월 처리

본 안건으로 부속유치원에서 제출된 자료는, 최근 이사회 추경 시 보고 사항으로 2025학년도 제2차 추경(2025. 10. 23.) 및 제3차 추경(2025. 12. 11.) 주 원인이었던

간서명란			
------	---	---	---

- 18 -

2025. 7. 24. 교육청 지도점검 결과, 유치원 명의 별도 통장 잔고 기부후원금 수입에 대해, 2025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처리되고, 전국 사립유치원 평균 대비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2027 회계연도 교육비 지원금 감액 예상하였던 상황의 후속 사항으로, 부속유치원이 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해 발생할 경우 책정되는 예산 항목으로, 기부후원금 등과 같은 목적성 수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결과로, 교육청으로부터 2026 회계연도 전액 목적에 맞는 집행 전제로 '명시이월금' 처리허가 받은 내용의 보고 사항이다.

2026. 1. 29.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명시이월금' 처리는 이사회 심의 결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부속유치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기부후원금 225,923,000원과 건축적립 만료금 95,132,000원의 합계 321,055,000원을 2025학년도 결산 시 명시이월 처리하기로, 이사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19)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서초센터 2025년 결산, 2026년 1차 추경

① 잠원·서초센터 2025년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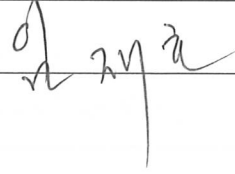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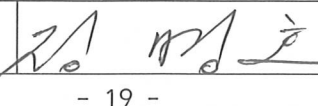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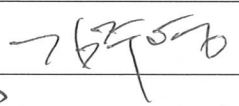
본 안건으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서초센터에서 제출된 자료는 2025년 결산으로, ㉠ 잠원센터는 차기이월자금 566,852,000원 포함하고 직전 추경 대비 168,373,000원 증가한 세입·세출 총액 3,772,373,572원, ㉡ 서초센터는 차기이월자금 86,621,343원 포함하고 직전 추경 대비 34,901,282원 증가한 세입·세출 총액 1,615,901,282원의 결산이다.

본 안건을 2026. 1. 29. 사전 보고받은 경영진단위원회는 다른 의견 없는 사항으로, 이사회는 세입·세출 총액 ㉠ 잠원센터 3,772,373,572원과 ㉡ 서초센터 1,615,901,282원의 2025년 결산 승인을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② 잠원·서초센터 2026년 1차 추경

본 안건으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서초센터에서 제출된 자료는 2026년 1차 추경으로, ㉠ 잠원센터는 확정 이월금 89,097,000원 증가 등 사유로 전체 예산 대비 75,000,000원 증가한 세입·세출 총액 3,848,000,000원, ㉡ 서초센터는 사업 수입 증가 및 확정 이월금 감소 등의 사유로 전체 예산 대비 25,000,000원 증가한 세입·세출 총액 1,675,000,000원의 추경안이다.

본 안건을 2026. 1. 29. 사전 보고받은 경영진단위원회는 다른 의견 없는 사항으로, 이사회는 세입·세출 총액 ㉠ 잠원센터 3,848,000,000원과 ㉡ 서초센터 1,675,000,000원의 2026년 1차 추경안 승인을 다른 의견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 결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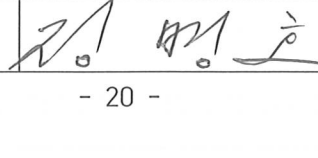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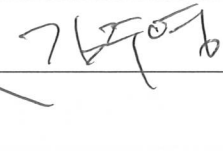
간서명란			
------	---	---	---

10. 간서명자 선정 및 폐회 선언

본 회의록 간서명자는 임재호 이사, 정명호 이사, 김주영 이사 3인으로 하며, 차기 2026년 제2차 이사회는 2026. 4. 2. (목)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하다.

본 이사회를 폐회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 없이 이사장의 '좋으면 예' 요청에 모두가 '예'하여 폐회하다.

박순석 이사의 기도로 본 이사회를 마치니, 오후 1시 10분이 되다. (끝)

간서명란			
------	---	---	---

붙임 : 「법인 경조금 지급 규정」 제정 규정

법인 경조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신대학교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이사장의 경·조사 축·조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법인소속 임직원의 경조사 지원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대상에게 지급한다. 단, 기타 대상은 이사장의 승인 하에 지급한다.

1. 정관상 임원 역임자(이사, 감사)
2. 각급 학교장(총장, 원장)
3. 법인 산하 위원회 외부위원
4. 법인사무국 직원
5. 수탁기관 기관장
6. 기타

제3조(지원기준) 이사장 명의의 축·조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준 외 지급사항은 이사장의 승인 하에 지급한다.

1. 축의금 및 화환

가. 본인 결혼 : 30만원

나. 자녀 결혼 : 20만원

다. 화환은 선택 사항

2. 조의금 및 조화

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30만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30만원

다. 자녀 사망 : 20만원

라. 조화는 선택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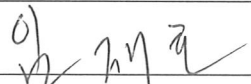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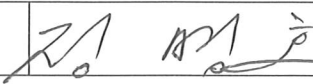
제4조(지원방법) ①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은 현금 및 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조(예산지원) 모든 지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26. 2. 3.)

① 이 규정은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란			
------	---	---	---

2026. 2. 3.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이사회

이	사	장	화	종	부	홍기영
이		사	김	기	철	김기철
이		사	송	태	근	송태근
이		사	이	진	영	이진영
이		사	방	성	일	방성일
이		사	정	명	호	정명호
이		사	배	만	석	배만석
이		사	임	재	호	임재호
이		사	김	미	열	김미열
이		사	홍	성	인	홍성인
이		사	김	주	영	김주영
이		사	박	순	석	박순석
이		사	장	봉	생	
이		사	이	영	민	이영민
이		사	이	철	우	이철우
감		사	백	창	현	백창현
감		사	박	형	근	

간서명란	임재호	정명호	김주영
------	-----	-----	-----